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16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 3

Ⅰ. 개요

1.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16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재수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1. 1.

(3) 회 부 일 : 2024. 11.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연간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등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를 300만원(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으로 하고, 도서등에

대하여 금액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6,481만원에서 2025년 7,37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로까지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제한도 등 특례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1],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table>
<tr><th colspan="2">소득공제율</th><th colspan="4">공제한도</th></tr>
<tr><th>구분</th><th>공제율</th><th colspan="2">구분</th><th>7천만원이하</th><th>7천만원초과</th></tr>
<tr><td>❶ 신용카드</td><td>15%</td><td colspan="2" rowspan="2">기본공제 한도</td><td rowspan="2">300만원</td><td rowspan="2">250만원</td></tr>
<tr><td>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❸ 전통시장</td><td>40%</td><td rowspan="2">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
<tr><td>❹ 대중교통</td><td>40%</td><td>대중교통</td></tr>
</table>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 등	30%		도서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2] 200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공제율을 소폭 인하하였으며,[3] 2007년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을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음.[4] 이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인상(2009년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1년 개정),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3년 개정), 서민 중산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 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함.

4) 이를 통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늘려야하며,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또한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수준별 한도 조정(2016년 개정), 도서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8년 개정) 등 소비심리 개선과 건전소비 문화 장착,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5) “2018 조세특례심층평가(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2018

나.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제도 신설(전재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 대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지급한 금액 ○ 공제형태: 소득공제 ○ 공제율: 30% ○ 공제한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과 합산하여 300만원 ○ 적용기한: 2025. 12. 31.	□ (현행과 같음) ○ 대상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전재수의원안 2024. 11. 1. 제출(의안번호 5169)

□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6]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시행일 2025.7.1.)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임.

□ 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임.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특례 기준이 되는 총급여 기준 상향(전재수의원안, 박성준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r>
<tr><td>- 전통시장</td><td>40%</td></tr>
<tr><td>- 대중교통</td><td>40%</td></tr>
<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td></tr>
<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신용카드</td><td>15%</td></tr>
</table>

○ 공제한도
<table>
<tr><td colspan="2">총급여 / 공제한도</td><td>7천만원 이하</td><td>7천만원 초과</td></tr>
<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
<tr><td>대중교통</td></tr>
<tr><td>문화비</td><td>-</td></tr>
</table>
</td><td>□ 공제한도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기준 상향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r>
<tr><td>- 전통시장</td><td>40%</td></tr>
<tr><td>- 대중교통</td><td>40%</td></tr>
<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8천만원(전재수의원안), 1억원(박성준의원안) 이하 한정</td><td>30%</td></tr>
<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신용카드</td><td>15%</td></tr>
</table>

○ 공제한도
<table>
<tr><td colspan="2">총급여 / 공제한도</td><td>8천만원 (전재수) 1억원 (박성준) 이하</td><td>8천만원 (전재수) 1억원 (박성준) 초과</td></tr>
<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
<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td><td rowspan="2">200</td></tr>
<tr><td>대중교통</td></tr>
<tr><td>도서 등</td><td>-</td></tr>
</table>
</td></tr>
</table>

* 전재수의원안 2024. 11. 1. 제출(의안번호 5169), 박성준의원안 2025. 1. 21. 제출(의안번호 7675)

□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총급여액의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상향하려는 것으로,

전재수의원안은 8천만원, 박성준의원안은 1억원으로 그 기준을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소득공제가 적용될 예정임. 이때, 해당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동 기준은 2017년 세법개정 당시 설정된 기준으로서, 총급여액의 수준과 관련된 별도의 개정은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음. 2건의 개정안은 소득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총급여액의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

□ 첫째, 소득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급여액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동 제도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7] 그러나 동 제도가 신설된 이후 소득공제의 한도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수준은 별도로 개정되지 않았으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7년 5천 360만원에서 2025년 7천 317만원으로 인상되었음. 따라서 해당 소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897)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2017.11

득 인상 수준에 맞추어 총급여액 기준을 인상하여, 문화생활 영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반 국민이 더욱 풍성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총급여액 인상으로 소득공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도서, 신문, 공연 등 문화예술 산업계 전반에 소비가 진작되는 정책효과가 기대됨. 2023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인 종합독서율은 2013년 72.2%에서 2023년 43%로 급감하였으며, 종이책의 경우 2019년 6.1권의 종이책 독서 권수는 2023년 1.7권에 이를 정도로 연간 종합독서량은 급감하는 추세임.

[표 5] 매체별 독서량 추이

(Base : 전체 응답자, 단위 : 권)

	종이책			전자책			종이책 + 전자책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19년	'21년	'23년	'19년	'21년	'23년	'19년	'21년	'23년	'19년	'21년	'23년
성인	6.1	2.7	**1.7**	1.2	1.5	**1.9**	7.3	4.2	**3.6**	7.5	4.5	**3.9**
학생	32.4	24.8	**26.2**	5.6	8.2	**7.8**	38.8	33.0	**34.0**	41.0	34.4	**36.0**

자료: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2023년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연시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9년까지 50% 내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23.0%까지 하락하였고, 2022년 기준 42.3%로 코로나 이전의 재정자립도를 회복하지 못하였음.

자료: 2023년 공연예술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24.11.25.

이에 개정안과 같이 문화시설 및 독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총급여액이 상향될 경우, 해당 산업군에 대한 소비가 증대되어 문화시설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특례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상향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임금 근로 일자리 평균소득은 363만 원으로 개정안에서 설정한 8천만원 및 1억원 이상의 임금 근로자는 임금 기준 상위 20% 내외의 근로소득자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세제혜택이 상대적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 있

음. 한편,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33%에 달하는 면세자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득구간별 분포]

(단위: %, %p)

연도	85만원 미만	85~150 만원 미만	150~250 만원 미만	250~350 만원 미만	350~450 만원 미만	450~550 만원 미만	550~650 만원 미만	650~800 만원 미만	800~1,000 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23년	12.6	8.7	22.2	19.8	11.3	7.6	5.3	5.3	3.4	3.9
2022년	12.9	9.1	24.1	18.8	10.9	7.2	5.0	5.1	3.3	3.7
증감	-0.3	-0.4	-1.9	1.0	0.4	0.4	0.3	0.2	0.1	0.2

자료: 2023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 보도자료, 국세청. 2025.2.25.

둘째, 개정안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세제 혜택이 소비 등의 지원효과가 크지 않은 근로소득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 7천만원 이상 8천만원이하(전재수의원안) 및 연 1억원 이하(박성준의원안)의 총급여액 대상자이며, 이들은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과 무관하게 문화예술 및 독서등을 소비·사용하는 인구 집단일 수 있음. 이로 인해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더라도 소비 유인은 크지 않은 채, 조세지출 규모만 확대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